

소프트볼위원회 규정

소프트볼위원회 규정

제 정 2019년 1월 17일
제7차 이사회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소프트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소프트볼을 널리 홍보·보급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볼 선수 및 팀을 지원·육성하여 소프트볼의 저변확대,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 회원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 협회 회원, 본 협회에 등록된 소프트볼 팀, 선수, 지도자에 적용한다.
② 본 협회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볼의 저변확대, 진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소프트볼 보급 및 저변확대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2. 소프트볼 선수 및 팀 지원·육성에 대한 조사 연구
3. 산하 단체 가입 및 지방 조직의 지도 육성
4. 소프트볼 경기장 시설물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협조
5. 대한체육회의 목적에 관계되는 사업
6.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협회 정관 제3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이 소프트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소프트볼 관련 활동을 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 회장은 위원회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경비의 지급) 정관 제39조 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1. 17.)